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0,533,062	17,415,992
일반회계	492,629,897	14,778,897
특별회계	87,903,165	2,637,095
공기업특별회계	48,417,759	1,452,53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314,298	579,42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9,103,461	873,104
기타특별회계	39,485,406	1,184,56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09,151	54,275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015,638	180,469
주차장특별회계	1,825,319	54,760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21,306,298	639,189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8,529,000	255,87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 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 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